

상호 협력 업무 협약서

한국중부발전(주)(이하 “중부발전” 이라 한다)과 에스솔루션, 가온플랫폼, 넥스트로(이하 “창업기업” 이라 한다)는 혁신기술 실증(PoC) 및 상생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.

제1조(목 적) 본 협약은 중부발전이 보유한 발전소 인프라를 제공하고, 각 창업기업의 기술 실증 및 성과 제고에 기여하기 위한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본원칙) 중부발전과 창업기업은 상호 협력 등에 있어 상대 기관의 제 규정을 존중하고 이 협약서에 명시된 사항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준수한다.

제3조(협력 분야) 중부발전과 창업기업은 다음 사항을 상호 협력하여 추진하되 본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세부 협력 사항과 협약서상의 조문 해석이 서로 다른 경우 양 기관이 협의하여 정한다.

1. 개별 실증 과제 수행을 위한 지원 및 수행
2. 혁신 기술 발굴·실증 및 상용화에 대한 관한 사항
3. 창업기업 실증 과제 수행 시 혁신 기술 적용 및 실증 고도화
4. 기타 협력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제4조(비밀유지) 각 기관은 협약 체결과 이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 및 제반 사항에 대해 사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공개하지 않는다.

제5조(홍보) 각 기관은 협력사업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보도자료를 작성 배포하는 경우 상대방 기관과 사전 합의하여야 하며, 보도자료에는 양 기관이 협력하였다는 문구를 명기한다.

제6조(분쟁해결) 본 업무협약의 수행에 있어 본 협약서의 해석, 효력 또는 이 협약에 의한 권리와 의무에 관한 분쟁은 각 기관 간 상호합의하여 우호적으로 해결한다.

제7조(법적구속력) 제4조, 제5조, 제6조 및 본 조항을 제외한 본 협약서상의 내용은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각 기관을 법적으로 구속하지 않는다.

제8조(협약의 변경 및 해지) 협약내용의 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 각 기관 간 상호 합의에 의해 변경할 수 있으며, 본 협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.

제9조(협약의 효력) ①본 협약은 각 기관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, 협약 기간은 서명한 날로부터 3년으로 한다.

②본 협약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협약 기간 종료일 1개월 이전까지 각 기관이 합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.

③각 기관은 본 협약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할 수 없거나 본 협약의 필요성이 해소된 경우 상호합의에 따라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.

제10조(보관) 본 협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상호 서명하고, 각 기관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.

2026년 9월 8일



가온플랫폼 주식회사
대표 조만영

조만영



주식회사 넥스트로
대표 구교찬

구교찬



주식회사 에스솔루션
대표 김창국

김창국



한국중부발전(주)
사장 이영조
代 친환경발전처장 오영철

오영철